

# 안산시누에섬등대전망대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1201
----------	------

제출년월일 : 2004. .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시 관내 누에섬에 등대를 설치함에 있어 관람이 가능한 전망대를 건립·운영함으로써 부존자원의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활용을 통하여 주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동 전망대(누에섬등대전망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전망대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정함 (안 제3조).
- 나. 전망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정, 설날, 추석 및 매주 월요일이외에는 매일 개관(09:00~18:00)하도록 함 (안 제5조).
- 다. 관람료는 유료(어른 1,000원, 어린이 500원)로 하되, 단체(30인이상)는 감경하고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면제하도록 함 (안 제7조, 제8조).
- 라. 전망대안에서 금지(제한)되는 행위를 규정함 (안 제9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향로표지법 제3조
-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0조 및 제135조

## 관련사업계획서 : 별첨

## 예산수반사항 : 건립비 1,400백만원(기확보)

## 사전예고 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03. 12. 6 ~ 2003. 12. 26 (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안산시 누에섬 등대전망대 기본 현황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심의필(2003. 12. 2)

## 안산시누에섬등대전망대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출·입항 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관내 누에섬 일원에 항로표지법에 의한 등대를 설치함에 있어 주민에게 어촌관광의 기회를 제공하고 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누에섬등대전망대(이하 “전망대”라 한다)를 건립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전망대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산170번지(누에섬)일원에 둔다.

**제3조 (사업)** 전망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대 및 전망대의 유지·관리
2. 등대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간행물 제작·배포
3. 전시실 소장품의 보관·보존 및 전시
4. 기타 전망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운영인력)** 전망대에 전망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전망대는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일반공중에게 공개한다.

②전망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년 신정, 설날, 추석 (각각 연휴기간을 포함한다)
2. 매주 월요일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망대의 대청소·소독, 시설물의 정리·보수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휴관할 수 있다.

④시장이 임시휴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휴관 기간과 사유를 명시하여 휴관 7일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관람 및 매표시간)** ①전망대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관람

## 24(부록)

2.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5시까지 관람
3. 관람권 매표는 개관 개시시간부터 개관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전망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표 및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①전망대의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

②관람료 징수를 위하여 관람권을 발행하되, 일반권과 할인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제8조 (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3. 6세이하 또는 65세이상인 자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5. 단체관람의 인솔자(30인당 2인이하로 한정)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 (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전망대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무단으로 조명 및 촬영을 하는 행위
2. 진열품 등을 만지는 행위
3. 전시관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4.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제10조 (변상조치)**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진열품 및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람자에게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관람료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소관 실·과		농어촌진흥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목
	담당·팀장 직위·성명	수산진흥담당 강승암
	담당자 성명·전화	이동욱 (행정 2333)

<별 표>

**관 랑 요 금 표** (제7조 관련)

구 분	금 액	
	개 인	단 체
어 른	1,000원	700원
청소년·군인	700원	500원
어 린 이	500원	300원

※ 개인

가. 어른 (20세 ~ 64세)

나. 청소년 (14세 ~ 19세, 중·고등학생)

다. 어린이 (7세 ~ 13세, 초등학생)

※ 단체 : 30인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여 관람하는 경우를 말함.

# 안산시누에섬등대전망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201
----------	------

제안년월일 : 2004. 2. 20.

제안자 : 경제사회위원장

## 1. 수정이유

- 등대전망대 관람료 면제에 있어서 국가유공자에우및지원에관한 법률시행령 제86조, 장애인복지법 제27조 등을 적용하여 관람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정함

## 2. 주요골자

- 등대전망대 관람료 면제 대상을 국가유공자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에서 배우자 및 유족 1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안 제8조 제1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에서 보호자 1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함 (안 제8조 제2호)

## 안산시누에섬등대전망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누에섬등대전망대운영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유공자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배우자 및 유족 1인 포함)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보호자 1인 포함)

# 조 문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p>제8조(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p> <p><u>1. 국가유공자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u></p> <p><u>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u></p> <p>3.~6.(생략)</p>	<p>제8조(관람료의 면제) .....</p> <p>.....</p> <p><u>1. 국가유공자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배우자 및 유족 1인 포함)</u></p> <p><u>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보호자 1인 포함)</u></p> <p>3.~6.(원안과 같음)</p>